

서울특별시



수신 내부결재
(경유)

제목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송(등기)

1.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(전용차로의 설치) 및 제160조 제3항(과태료)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와 관련입니다.
2. 무인카메라와 버스장착형카메라 및 시민신고에 의해 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전 자진납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차량 소유주에게 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합니다.

- 가. 위반일시(렌트카 변경 재부과) : `18.06.09 ~ `18.09.30
 - 무인감시카메라(통행위반) : `18.10.01 ~ `18.10.14
 - 주행형, PDA단속(시민신고) : `18.06.09 ~ `18.10.14

나. 통보건수 : 김희경 등 5,078명

다.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현황

구분	건 수	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				적 발 제 외	
		소 계	CCTV (통행위반)	기 동(PDA) (주행형)	시민 신고	서손 건수	제외사유
금회	5,444	5,078	4,963	42	73	366	-연속단속 -면제차량
전회 누계	136,688	110,136	104,946	3,719	1,471	26,552	-진입구간 짧음 -자납
누계	142,132	115,214	109,909	3,761	1,544	26,918	-기타

라. 통보방법 : 자동차 소유주에게 등기우편 발송

마. 의견진술기한 및 사전납부일 : `18.10.17 ~ `18.11.06(20일간)

- 붙임: 1. 사전통보 등기발송 내역. 1부.
2. 적발제외 내역 1부. 끝.

노미선 교통지도과 2018-11-07 15:47:27



서울특별시

주무관 노미선 전용차로과장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10/17 김정선

협조자

시행 교통지도과-23227 () 접수 ()
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(서소문동) /
전화 2133-4569 /전송 2133-4904 / / 부분공개(6)